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669호(號) 1929년(昭和 4) 3월 29일 목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00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232호(號)(시베리아(Siberia) 경유(經由) 유럽·아시아 여객 및 수하물 연락운수규칙[歐亞旅客及手荷物聯絡運輸規則] 중(中) 1929(昭和 4)년 4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9(昭和 4)년 3월 29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제27조(條)제3항(項) 가호(號) 중(中) 「2」를 「3」으로 하고, 아래[左]의 1항(項)을 추가(追加)함.

2    로즈(Rose), 바르샤바(Warsaw), 스토르브체, 호이니체(Chojnice), 단치히(Danzig) 및 키예프(Kiev) 행(行)의 수하물(手荷物)에 대하여는 인지세(印紙稅)로서 수하물증서(手荷物證書) 1통(通)당(當) 2센트(cent·仙)